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가합560710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기훈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424,7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통상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 사업자’라고도 한다]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서명패드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물품을 ‘이 사건 물품’, 위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C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해왔다.

나. 원고는 2017. 8.경 C과 피고의 직영 및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관리권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제1 관리권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관리권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 대해 이 사건 물품의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C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285,424,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 C은 2020. 1. 1. 원고와 갱신하여 체결한 관리권위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묵시적으로 양도하였다. 그러나 C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는지를 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20. 1. 1. C이 원고에게 피고의 가맹점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권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관리권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의 산정 및 정산 방식은 원고와 피고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 따르고 C은 대금의 회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제2 관리권위탁계약서 제6조 제1항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에 대해 C이 회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C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C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아니다.

나) 이 사건 제2 관리권위탁계약은 2020. 1. 1. 체결되었고 위 계약서는 그 말미에 원고와 C이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C의 물품대금채권은 C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관한 것이어서 위 물품의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2 관리권위탁계약이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그 전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관리권위탁계약에도 C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다) 이 사건 제2 관리권위탁계약은 원고가 C을 위해 신용카드결제, 민원처리 업무 등 피고의 가맹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C이 원고에게 관리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제1조, 제3조, 제5조). 원고의 주장에 이르더라도 C의 물품대금채권은 수억 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제2 관리위탁계약서는 그에 상응하는 원고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정하고 있지도 않고, 달리 C이 원고에게 위 금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C에 ‘채권양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나 C은 이를 거절하였다(갑7).

2) 나아가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설령 원고가 C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하더라도, 갑 제18호증(통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양도인인 C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했다거나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피고에게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의 권리’가 아니어서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C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의 가맹점에 설치·공급한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C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물품을 임의로 자신의 가맹점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 물품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원을 원고에게 침해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급부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만 있어 매수인이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인도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의한 급부만을 이유로 제3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부합 등의 사유로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의취득이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제3자는 그러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3)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았고 원고는 C와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의 영업장에 공급·설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C, 원고 사이에 순차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되어있어 원고와 피고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C에 대해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그 금원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보유할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물품에는 C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모델명에도 C의 상호가 포함되어있는 등 이 사건 물품은 C이 제조한, C 소유의 물품으로 보인다(원고도 자신이 위 물품을 제조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공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 관리권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물품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C이 원고에게 결제승인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매수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가 C에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는 C의 대리점으로 발주가 들어오는 경우 C으로부터 출고된 물품을 인도 받아 이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주구조이지만(2020. 5. 3. 자 제출 첨부자료 1면) 예외적으로 피고가 발주를 하는 경우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한 뒤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같은 첨부자료 2면), 원고가 특별히 피고의 영업장에 물품을 설치할 경우에만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직접 매수해야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그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C이 아닌 원고와 직접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C의 대리점으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설치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의 가맹점 중에서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결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 대금의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갑11)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의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꾸준히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있었고 C이 원고 소유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① 피고는 2016. 8. 1. C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고 C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원고는 피고가 직영점에 대해서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가맹점에 공급되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서도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C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을 받았고 이 사건 물품에는 C의 상호가 새겨져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와 물품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직접 협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C의 대리점 지위에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 사실에 대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민법상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그 물품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18조의3 제4항에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C에 물품대금 285,424,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강제로 취득한 것은 이른바 ‘리베이트’를 수취한 것이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갑 제11, 35호증(각 이메일), 갑 제19호증(2015. 10. 23. 자 신문기사)의 각 기재로도 피고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원고나 C에 부당하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¹⁾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김혜성, 판사 정의진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2022. 7. 3. 자 준비서면을 통해 주위적 청구원인을 양수금청구, 예비적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정리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